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

2022







CONTENTS

매뉴얼 활용방안	06
Ⅲ 단계별 추진 절차	08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16 23 26 31 40 44 48
IV 참고자료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신청서 양식 2. 결과 보고서 양식 3. 요소별 핵심 질문 및 개선방안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절차(예시)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4 55 61 63 87



매뉴얼 활용방안







매뉴얼 활용방안







✓ 구성

- (질문)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요소별 진단 사항
- (요구사항, 개선방안 작성란) 요구사항, 개선방안 작성을 위한 공란
- (실행TIP) 핵심요소별 지원 수행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how to) 제시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식

✓ 활용방안

- 1. (요구사항)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등을 토대로 사업장 현황 파악
- 2. (개선방안 제시)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질문별 체크리스트 중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마지막 내용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 실행TIP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예시와 함께 제시
- 3. (지원 보고서 작성) 회차별 중점지원 내용, 개선 및 권고 사항 작성
 - (개선 및 권고방안) 체크리스트 점검사항과 개선방안을 7대 핵심요소별 기술지도 사항에 정리하여 작성

지원 시 주의사항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본질*을 강조하고 매뉴얼의 질문 요소별 각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 * ① 근로자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 발굴. ② 사업주가 여건에 맞게 안전보건 조치 수행.
 - ③ **근로자**가 위험요인의 제거 · 통제방안을 인식하도록 교육 등을 통해 공유
- ②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사업주의 산재예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임을 사업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
- * 동 지원을 받은 것으로 중처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된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증빙)될 수 없으며, 향후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 발전시켜야 함을 반드시 사전 안내**



단계별 추진 절차







□ 1 사전 준비







✓ 참여 안내

위험업종ㆍ사고발생ㆍ신규설립 등 지역별 핵심타깃 사업장. 패트롤 현장점검ㆍ지역특화사업 등 사업수행 시 신청 사업장 대상 선정

- 지원 시 반드시 사업주 참석* 안내. 사업장 준비 사항 제시(필요시 안내문 발송)
- * 본사 포함 다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 사업주(경영책임자) 참석 요구

〈사업장 준비 사항〉

①안전보건관련 매뉴얼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필요한 업무절차서. ②안전보건조직도(선임현황). ③위험성평 가 기록. ④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록. ⑤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 기록. ⑥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업체선 정 평가 기록, ⑦최근 5년간 재해현황(요양신청서) 및 재발방지대책 ⑧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⑨최근 5년간 안전보건관련 점검현황, ⑩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안전검사 수검현황, ⑪교육일지, ⑫보 호구 지급대장, ®정비·보수 작업현황 파악 서류(공무 작업일지, 자재구매 이력, 외주 작업의뢰 내역 등) 등

✓ 기업정보 확인

신청서를 활용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조직 및 재해현황, 업종, 규모, 공정 등 특성을 사전 파악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도 제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사전 숙지

✓ 구축수준별 맞춤형 지원

구축된 수준에 따라 다음 회차 내용 파악 등 유연한 지원 실시

✓ 현황파악 등

III.구축요건별 확인사항을 토대로 사업장 현황파악 후 보고서 [참고1] 작성 및 발송

02 1회차 방문







목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는 7가지 핵심요소의 이해 및 구성원의 인식전환

주요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및 지원절차 설명
- 경영층(CEO) 면담(사업장과 협의하여 1회차 또는 2회차 시 면담)
- 사업장 현황(기본정보, 생산공정, 위험요인 등) 파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파악
- ① **지원 절차 설명** 방문목적 및 일정, 사업 취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 명확하게 설명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본은 사업장에 제공
-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적, 핵심요소, 이행 필요성 등 설명
 - 안전보건담당자, 부서장, 근로자 대표 등 참석 및 의견 청취
- ③ 경영층 면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층의 의지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경영층의 참여 수준 파악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사항
 - 회사의 규모, 위험요인 등에 적합한 자원 배정에 대한 사항
 - 경영층이 주재하는 회의 운영 여부 등
- (4) 사업장 등 현황 파악 사업장 기본정보 및 위험요인 보유 현황, 생산공정, 사업장 내 · 외부의 현안사항 파악
-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파악** 7대 핵심요소별 업무절차 수립 등 구축수준 파악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인력 · 장비 · 시설 ·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파악
 - 구축 지원 가이드를 참고하여 업무절차 자체수립 및 시행 독려 → 2회차지원부터는 사업장 자체 수립· 시행한 내용의 검토·보완 등 업무 수행 권장
 - ☞ 사업장 자체적으로 업무절차 마련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가이드』를 1회차 지원 시 제공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게 변경 · 수정하여 사용토록 안내
- ⑥ 1차 지원 강평 및 보고서 작성 1차 지원 결과를 안내(강평)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전달 (지원일 포함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이 3 2회차 방문







목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상태 및 이행현황 점검, 경영층(CEO) 인식 제고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별 업무 수준 평가 및 이행 · 평가 확인
-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적정성 확인
- 사업장에서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확인
- 유해 · 위험요인별 제거 · 대체 및 통제 방안 적정성 확인
- 1회차 개선 · 권고사항 반영 확인 및 피드백
- ① **7대 핵심요소별 구축 상태 확인** 아래 핵심 요소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파악 및 이행상태 확인

경영자리더신

안전보건방침 등 안전보건의지 표명 및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하였는지 확인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 확보안이 마련되었으며,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확인

근로자의 참여

안전보건관리 전반 정보 공개, 모든 구성원의 참여 및 협의, 근로자 제안제도 운영 등 자유로운 의사 반영 문화 조성 - 현장의 위험요인 파악, 개선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여부 확인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추정 · 결정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관리 시 정기평가 외에도 수시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재해사례, 기계·장비 보유현황,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MSDS 등을 활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확인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시 안전담당 인력뿐 아니라 현장의 근로가 참여하는지 확인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개선대책 수립 시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위험성 추정 · 결정방법의 적정성 확인
- ※ 특히, 추락·끼임 사고사망 등 중상해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현황을 집중 확인

위험요인 제거 · 대체 · 통제

파악된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및 제거·대체·통제 절차방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 및 안전작업절차 수립 -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따라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② 현장 확인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추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 결과 확인 · 지도(필요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영자, 근로자 대표 참석
 - ☞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정의 끼임 · 추락요인 우선 확인 · 지도

③ 2차 지원 강평 및 보고서 작성

2차 지원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강평)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전달 (지원일 포함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04 3회차 방문







목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정착 유도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별 업무 수준 평가 및 이행 · 평가 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상태 점검 및 목표 · 추진계획 이행점검
- 구축상태 수준 재평가 및 피드백
- 경영층 · 부서장 등 면담
- 2회차 개선 및 권고사항 반영 확인

① 7대 핵심요소별 구축 상태 확인

아래 핵심 요소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파악 및 이행 상태 확인

비상조치계획

사업장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비상사태별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

도급 · 용역 · 위탁시 안전확보

안전보건수준 평가 절차 마련 및 하청 · 파견 · 공급 · 판매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및 소통 · 협력 체계 구성 · 운영

평가·개선

안전보건목표ㆍ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상태 정기(반기 1회 이상)적 확인 - 각종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기간(분기별)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 검토 및 개선 확인, 개선완료 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확인

② 구축상태 재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적인 구축상태에 대한 재평가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권고대책 제시

③ 경영층·부서장 등 면담

경영층 · 안전보건관리자, 부서장 및 부서 안전보건 담당자 등을 면담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해도를 확인하고 역할 및 권한의 인지 여부 확인

☞ 3회차 지원으로 종료 시 경영층(CEO) 강평 실시

④ 3차 지원 강평 및 보고서 작성

3차 지원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강평)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전달(지원일 포함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05 4회차 방문 (필요시)







목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및 경영층(CEO) 강평

주요 내용

- 지원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확인
- 경영층(CEO) 강평

① 이행 점검

지원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7개 핵심 요소별 보완할 점을 최종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

② 경영층 강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에 대한 최종 결과를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당부

③ 4차 지원 강평 및 보고서 작성

4차 지원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강평)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 전달 (지원일 포함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06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







✓ 패트롤 점검

지원 중 파악된 중대 유해 · 위험요소(끼임 · 추락 등)가 체계구축 최종 지원 시 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후 패트롤점검으로 전환

✔ 사후관리

최종 지원 후 사업장의 추가 요구 사항 등 유선 등을 통해 사후관리

✔ 점검결과 입력

점검결과는 (신)ERP-통합정보-기관/연도별사업관리-사업수행등록(ERP외)-(2022년) 산업안전 현안 적시대응(기획점검-소규모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에 등록



구축요건별 확인 사항







01 경영자 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 방침수립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 포함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 및 소통활동여부(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간담회 등)				
④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방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여부				

✓ 메모

실행 TIP

- ① 안전보건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전반적인 인식과 역할 중요
- ②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은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해야하는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있어야 함
- ③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의지, 철학을 넘어서서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어야 함

안전보건경영방침

O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 년 ○○ 월 ○○ 일

00 회사 대표이사 (서명)

1-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기업 전체, 본사, 사업부서별, 현장별, 팀별 목표 설정 여부				
② 안전보건목표에 재해자수 등 측정 가능한 지표와 안전보건개선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포함 여부				
③ 안전보건활동이 목표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기적 검토 여부				
④ 안전보건목표와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관성 유지 여부				
⑤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구성원에게 공개 및 추가사유 (종사자 협의 등 목표 수정 등) 발생 시 수정 여부				

✓ 메모

실행 TIP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
- ②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
- ③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④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 ⑤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목표설정 예시

- 경영방침 게시 건수(온오프라인)
-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율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 근로자의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작업표준 및 지침서 변경시 개정율
- 고위험 발굴 및 개선 이행율

- 기계·설비의 정기검사 실시율
-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 작업허가제 등 도입·개선 건수
-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률
- '재해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건수
-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 건강검진 실시율
- 유소견자 상담율
- 배치전 건강검진 실시율

안전보건활동 목표 및 추진계획

결 11	작성	검토	승인
재			

목표	전사 ㅁㅠ/비료주지게취			추진일정				예산 달성율		ALTA / HTULO	
용시 위험상병가 실찍		부추진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성과지표	담당부서			실적/부진사유
수시 위험성명가 설립	저기 이들! 너	ma 기획	0				1월/14 이나	저는다	F00		
유시 18 28 27 실찍	정기 취임성	실적					1외/년 이상	신무시	500		
유익함 개선	A 11 01=1141	nd 기 계획	0	0	0	0	A 11	집단다			
교내임 개선 설립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	수시 위험성	평가 실적					수시	선무서			
변환 변	- 01-1 - II	계획	0	0	0	0					
아까시교수십 설립	고위험 개선	선 실적					개선이행 100%	전무서	-		
아저사고수입 설립 이 이 아 6\\(\alpha\) 전부서 100 (2\\alpha\) 전부서 100 (2\\alpha\) 설적 이 이 아 6\\(\alpha\) (4\\alpha\) 전부서 100 (2\\alpha\) 선적 (2\\alpha\) 선적 (2\\alpha\) 선적 (2\\alpha\) (2\\alpha\) 선전 - (2\\alpha\) 선전 (2\\alpha\) (2\\alpha\) 선전 (2\\alpha\) 선전 (2\\alpha\)			0		0						
안전보건교육 (경기) 실적	아차사고수	:신					1건/월/인당	안전	-		
(청기) 실적	아저보거규		0	0	0	0	6시간/브기				
안전보건교육 (관리성독자) 실력						-		전부서	100		
(관리감독자) 실적					0		1/1171/1471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성격								안전	-		
[특별안전교육] 설적					0						
안전보건교육 (신규재용시) 실적								안전	50		
[신근개용시] 실찍											
안전보고교육 (MSDS) 실적			0	0	0	0		전부서	30		
전(MSDS) 실적			+-	-							
선재 산재 사고 Zero 이 제축기 검교정			0	0	0	0		전부서	30		
산재 사고 Zero	(MSDS)						(유애물실 쉬랍사)				
산재 사고 Zero 에추기 검교정 계획			0	0	0	0	변경시	안전	_		
사고 간단점	사재 제·개정	실적					201				
지속	아저거니	계획			0			아저	50		
# 2 변시설 경기점검 설찍 (강지기,계속장비등) 안전 100	사고	실적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22	50		
대륙가임표명 실적 (경지기,계측장비등) 라면 100	Zero Nanan	계획	0				1회/년	OLTA	100		
아	계속기 검교	실적						안선	100		
한 한동안전점검 (협력업체 뒤) 실적	1 81114 737	1고 계획	0	0	0	0	4 =1 /01	OLT			
- 근로	or 조망시설 장기	I심검 실적					1외/철	안선	-		
- 근로	합동안전점	검 계획	0	0	0	0	4.51.(0)	0171			
스스실 일반 건강검진 실찍	- (협력업체 1	有) 실적					1외/철	안선	-		
응수 Zero 등수 건강검진 대회				0			1회/년				
일수 등수 건강검진	손실 일반 건강검	I진 _{식전}					(관리직 1회/2년,	안전	500		
로는 전강검진 실적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300 배치전 건강검진 계획 이 이 이 이 이 이 아	익수						연성적 (회/ (단)				
배치전 건강검진 계획 ○ ○ ○ ○ ○ 해당시 안전 - 의 대회 ○ ○ ○ ○ ○ ○ ○ ○ ○ ○ ○ ○ ○ ○ ○ ○ ○ ○	특수 건강건	[진		0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300		
배지선 건강검신 실적	Zero			_	_	_					
유소견자 사후관리 게획 ○ ○ ○ ○ ○ ○ ○ ○ ○ ○ ○ ○ ○ ○ ○ ○ ○ ○	배치전 건강	건시 <u></u>	0	0	0	O	해당시	안전	-		
유소선사 사후관리 실적 58/월 안선 -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1회/반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TBM 실시 계획 ○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 ○ ○ ○ 1건/월/인당 전부서 -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실적 1회/반기 전부서 -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 수시 전부서 -				_	_	_					
비상조치훈련 게획 ○ ○ ○ 1회/반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전부서 가입할 전부서 무 전입하가서 발부 실적 ○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무 전원 전부서 무 전원절 전부서 무 전원적 이 ○ ○ ○ ○ ○ ○ ○ ○ ○ ○ ○ ○ ○ ○ ○ ○ ○ ○	유소견자 사후		0	0	O	U	5명/월	안전	-		
비상소지훈련 실적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 ○ ○ ○ 1건/월/인당 전부서 -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실적 1회/반기 전부서 -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 수시 전부서 -						_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비상조치훈	.려		0		U		전부서	30		
작업하가서 말무 실찍	.5 ,2	실석	-	_			(왁제, ㅜ물, 내끠, 구소)				
H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	작업허가서 !	각무	0	0	0	0	단위 작업별	전부서	-		
TEM 실시 실적 CEM 작업별 전부서 -	13 , 1 11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 ○ ○ ○ 1건/월/인당 전부서 - 안전보건 예산 집행 설적 수림예산 이행 전부서 -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실적 1회/반기 전부서 -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전부서 -	TBM 실시		0	0	0	0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안전보실제도 운영 실적 1선/월/인당 전부서 -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실적 1회/반기 전부서 -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전부서 -		실적									
실적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실적	안전관찰제도	우면	0	0	0	0	1건/월/인당	전부서	-		
변신보건 예산 입행 실적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실적 1회/반기 전부서 -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 ○ ○ ○ ○ ○ ○ ○ ○ ○ ○ ○ ○ ○		실석					_, _, _0				
성과측정 (이행여부 확인) 실적 - 1회/반기 전부서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안전보건 예산	수 이 이	0	0	0	0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이행여부 확인) 실적 1회/반기 전부서 - 시정조치 이행 실적 수시 전부서 -		실적					0				
(이행여부 확인)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이 이 이 어 수시 전부서 -				0		0	1회/반기	전부서	_		
시성소지 이행 실적 수시 전무서 -	(이행여부 획						= .				
실적	시정조치 이	[핸	0	0	0	0	수시	전부서	_		
	710±710	실석					17.9	E 1111			
기억사건E 15/바기 아저 =	경영자건티			0		0	1회/바기	아전	_		
80시마스 실적 1시간 다	00/10-	실적					,				

1-3. 안전보건 자원 배정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제안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조직(담당자) 구성 여부				
②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업무분장 실시 여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				
③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 검토여부				
④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여부				
⑤ 그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확보 여부				

✓ 메모

실행 TIP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적용 사업장	선임대상 / 자격	주요 업무
관리감독자 (제16조) *부서장, 직장·반장등 중간관리자	5인 이상	생산 관련 직원(업무) 지휘(감독) 담당자	- (해당작업)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ㆍ보호구ㆍ방호장치 점검, 교육ㆍ지도 -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19조)	아래 업종 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 제조, 임업, 하수 · 폐수 및 분뇨처리 등 업종	안전ㆍ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교육이수 (겸임가능)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 전문인력 배치 기준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1명 이상/(대상업종)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업종를 위탁한 경우

※ 안전보건 관련 예산 수립 관련 사항

- ①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 ②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란 산안법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임
- ③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경우 예산 편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됨

[예산 편성표 (예시)]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1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안전보건 중장기 계획 추진		
안전보건인증 획득		
안전시설 신규 건설 및 투자		
예비비		

^{* 20~21}년은 결산기준, 22년은 편성기준으로 작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인력(예시)]

-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
-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관련 작업 시 신호수 배치(안전보건규칙 제39조, 제40조) 등

1-4.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통제 능력이 유지되도록 권한, 책임 및 조직체계 구축 여부				
②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 인지 및 안전보건활동 참여 운영 여부				
③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 협조체제 구축 여부				
④ 조직 내 유해·위험요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 관리 여부				
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평가·관리하는지 여부				

✔ 메모

실행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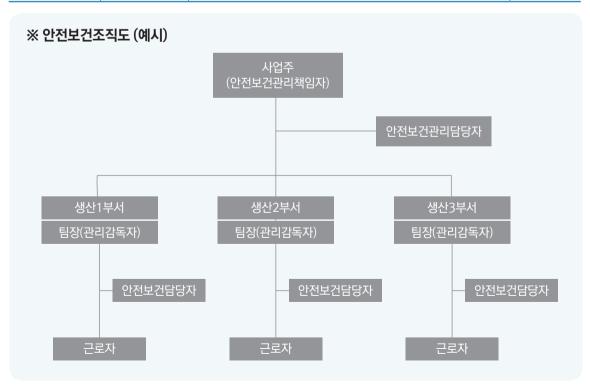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선임 및 담당업무

직책	성명	담당업무	비고
안전보건 담당자		 해당 팀의 작업장과 관련된 설비의 안전점검 및 정상 작동상태의 확인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내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의 관리 직원에 대한 안전한 작업의 지도 감독 및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행 소속된 직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고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 및 감독 작업 시작 전 작업의 안전성 점검 및 근로자 준수사항교육, 안전조치 확인 및 작업 중 수시 점검확인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 지휘 기구 및 공구 점검, 불량품 제거 작업 관련 설비시건 및 안전표찰, 표지판의 부착,제거의 확인, 감독 및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점검활동 시행 등 	

실행 TIP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선임 및 담당업무

직책	성명	담당업무	비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경영체계의 이행 및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 안전보건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자원 제공 안전보건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팀원 교육 실시 해당 팀의 안전사고 기록 유지 해당 팀의 안전보건 성과 평가 해당 팀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 보고 기타 안전보건활동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 	
근로자		현장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① 기계설비 등 방호조치 상태의 유지 ② 지정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 정리정돈 ③ 안전수칙 준수 및 기타 제반 규정의 준수 등 ④ 안전보건경영체제 이행, 안전작업 수행 ⑤ 당해 작업의 위험성평가 협조 등	



02 근로자의 참여







2-1. 안전보건 정보공개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경영방침, 목표, 산안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게시				
②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				
③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정보 공유				
④ 안전보건 확보관련 근로자 참여 공식적인 절차 마련				

✓ 메모

실행 TIP

① 사내 인트라넷, 사내 게시판 등을 이용한 안전보건 법규, 유해위험물질, 사고발행현황 공유

** 정보 파악 및 공개 절차(예시) 최고 경영자 (사장) 안전보건 주관부서장 대외기관 연락사항 발생 (안전・보건)

2-2. 근로자 참여 절차

✔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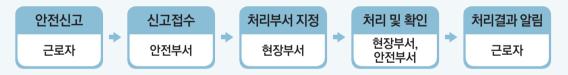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도급인·수급인 협의체(법 제64조), 건설공사 협의체(법 제75조) 등 운영 여부				
② 작업전 안전미팅(TBM) 도입 운영 여부				
③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신고·제안 절차 운영 여부				
④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 메모

실행 TIP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실시
- ② 팀 또는 공장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 필요
- ③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견 반영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방식, 절차, 기준 필요

[안전신고 절차(예시)]



※ 안전부서는 현장 위험상황 처리결과 확인

[근로자 참여 절차 예시]

작업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 활동
 ▲ (개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논의하고 결정 ▲ (유의사항)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기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회의 종료 전, 관리감독자는 기본 안전수칙 준수,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재강조 이행결과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효율적인경우에는 공식적인 작업절차에 반영 	▲ (개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 활동 ▲ (유의사항) 제안 형식은 간소화하고,제안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 - 제안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하고(사내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채택된 제안은 공개하고,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모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등에 활용

2-3. 참여 문화 조성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여부				
② 안전신고 및 안전제안 조치결과 공개 여부				
③ 신고 및 제안자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여부				
④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마련 시 해당 작업자 참여여부				
⑤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포함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 메모

실행 TIP

[근로자 참여 문화조성(롯데이네오스화학(주) 사례]

ex) 상·하반기 1회 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강조주간' 운영

월	화	수	목	금
 출근 시 안전 캠페인 초산 탱크로리 차량점검 및 누출사고대응 훈련 	 불시 비상대응 훈련 (화재 or 케미칼 누출) 안전환경 자체 감사결과 공유 및 설명회 	 사고사례 안전워크숍 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금연 / 절주 홍보관 체험 	 안전준수서약서 서명식 초산 탱크로리차량 주행 중안전운행 평가 	소화기방사훈련 안전강조주간 소식지 배포

- 안전슬로건 게시(예: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 안전준수다짐 5분 사내방송(점심식사 전 11:55분~12:00, 팀별 1명 순번제)
- 안전표어 공모(수상작은 차기 정기보수 현수막 부착)
- 사고사례 전시회 (국내외, 합작선 사고사례)

※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활동 예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목표 설정
- 부서별 ·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 관리, 통제방안 마련
- 안전작업 지침 작성 및 문서화
- 안전절차 수립 및 개정

- 사내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근로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결과 모니터링
- 현장 안전점검 실시

□3 위험요인 파악







3-1, 위험요인 정보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 마련 여부				
② 위험요인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여부				
③ 위험요인 정보 변경 시 수시로 위험요인 파악 여부				
④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정리 여부				
⑤ 위험요인 정보 파악을 위해 충분한 자료수집 실시 여부				

✓ 메모

실행 TIP

※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 시 고려 사항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한 체계적인 과정
-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포함
- 소속근로자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납품 등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참여 가능

※ 위험요인 파악 시 참고 자료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 재해 보고서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외부 전문기관 지도 · 점검 결과

- 공정별 작업절차도

- 작업환경측정 결과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근로자 교육자료

※ 위험요인 파악 시기

- 위험요인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설비, 원재료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도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 이내로 개선하고자 할 때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산업재해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아차사고 조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③ 재해조사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④ 사고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또는 전문가와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 참여 여부				
⑤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보고				

✔ 메모

실행 TIP

※ 산업재해/아차사고조사 절차(예시)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팀	조사보고서 결재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결과 결재	비고
중대재해	즉시	안전부서, 생산부서,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최고경영자	최고경영자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 실시
중상해재해	즉시	안전부서, 생산부서,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최고경영자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위험성평가 및 특별점검 실시
경미한 재해	24시간 내	사고부서장 및 근로자	최고경영자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해당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사례집 발간
아차사고	서면보고	해당부서장, 근로자	최고경영자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해당부서장 결재 후 주기적으로 최고경영자 보고	사례집 발간

※ 사고조사/아차사고 보고서 양식(예시)

	사	고조사 5	보고서		
	全奇	성명	4.1	n,	성명
사고		(23)			(2)
조사반		(2)			(2)
		(c)			(2)
사고명			사고일시		
인적피해	소속 : 성명	: 작급:			
물적피해					
사고장소		상해부위		사고형태	
사고내용					
피해내용					
의사/					
외부전문가					
소견					
재발					
방지대책					
기타내용/					
현장조사					

작	업명		등급	A (B) (
N	업내용				
사	고내용				
발	생원인				
	방대책 시내용)				
\$ 30 £	업현장 확설명 원,도면)				
8-0		위험정도		五利	
A		예상되는 경우	조업중단 및	즉시조시	
В	재해(사고)발생시 *중상 또는 시설물 부분 파손 및 조업의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조치 후 안전대책 수립시		
c		생 시 #경상 또는 당해 시설물의)이 예상되는 경우		업은 가능하나. 1 관리적 조치	

3-3. 위험 기계·기구·설비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작성 및 공유				
② 위험기계·기구, 설비의 관리방안, 예산, 책임자 지정 및 관리				
③ 산업재해, 아차사고 발생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④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⑤ 기계·기구·작업 별 작업자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메모

실행 TIP

※ 위험기계·기구·설비 목록(예시)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 작업장소	수량	검사대상	방호장치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비고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2	프레스(P-5~8)	30ton	2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광전자식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법정 방호장치	1개월	부딪힘, 넘어 짐	자격자 (2명)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과부하방지장치, 훅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3개월	부딪힘, 끼임	
5	압력용기(V-1~5)	1 m³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폭발	
6	압력용기(V-6~10)	0.5 m³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밸브	3개월	폭발	
7	산업용 로봇(R-1)	50kw	포장	1	산안법 안전검사	안전도어, 방책	1개월	부딪힘	

3-4. 유해인자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② 화학적인자(유해위험물질)를 목록화하여 관리				
③ 물리적, 생물학적, 인간공학적 인자를 목록화하여 관리				

✓ 메모

실행 TIP

※ 유해위험물질 목록(예시)

화학	CAS No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CAS	S 폭발한기	폭발한계(%)		인화점	발화점	유해성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일일	저장량	비고
물질명		하한	상한	기준	(℃)	(℃)	위험성 구분	관리기준	사용량	~100	0175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1에 해당하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 관리

- 물리적인자 : 소음, 진동, 방사선, 기압, 기온 등
- 생물학적인자: 감염병(혈액매개, 공기매개, 곤충 · 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등
- 인간공학적인자 :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부담작업 등

3-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위험장소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				
②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마련 여부(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을 포함)				
③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시 현장작업자 참여 여부				
④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의 작업장소,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재해유형 등과 연계 여부				
⑤ 공정변화에 따라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에 대한 파악 실시				
⑥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허가절차를 통하여 관리 여부				

✓ 메모

실행 TIP

※ 비정형작업* 위험요인 관리

* 비정형작업: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 아닌 특정 사건 발생에 따라(신규설치, 정비·점검) 또는 여러 공간(운반, 상·하역 등)에서 이뤄지는 정형화되지 않는 작업

※ 작업별 위험요인을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공식화된 절차 운영

- * ① 신규작업 등의 위험요인 파악 \rightarrow ② 고위험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절차 마련 \rightarrow
 - ③ 도급 · 용역의 경우 작업의 안전성 확인 후 허가 → ④ 주기적 확인
- ※ 작업의 위험요인은 작업장소,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재해유형과 연계 파악

※ 작업별 위험 관리대장 예시

단위 작업 장소	작업내용	위험 코드	관련기계· 기구·설비 (관리번호)	화학물질명 (CAS No)	발생 가능 재해형태	관련 협력업체	위험성	비고
P1	지게차 이용 운반작업	H-P1-01	지게차 (00000)		부딪힘	無	고	작업지휘자 배치
구역	하부피트				질식			
Q2 구역	화학물질 보충 작업		ㅇㅇ탱크 (00000)	톨루엔 ()	화재·폭발	有	고	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 작업허가절차 예시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4-1.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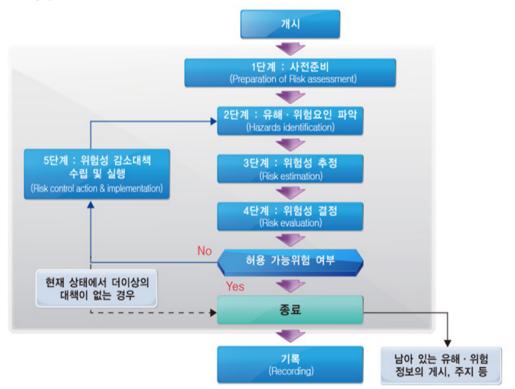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위험성평가 관련 시기, 대상, 방법, 인원구성 등에 대한 규정				
② 발굴한 위험요인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관리				
③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정도를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④ 절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상시·주기적(정기/수시평가)으로 실시 여부				

✓ 메모

실행 TIP

※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도



4-2.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제거, 대체, 공학적통제, 행정적통제, 보호구 순으로 대책 마련				
② 제거·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복수의 통제방안 [예, Lock Out Tag Out(LOTO) 등 행정적 통제와 보호구 착용] 등 마련				
③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참여 여부				
④ 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비정형작업 LOTO 절차 운영 여부				
⑤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주의 검토 여부				

✓ 메모

실행 TIP

※ 위험요인의 제거 · 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PPE방안
건설현장 개구부	설계ㆍ시공 시개구부 최소화	안전난간 또는덮개 설치	`추락 위험` 표지판 설치	안전모·안전대착용
끼임 위험 기계 · 기구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덮개 등 방호장치설치	`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도입(29p 참고)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유해화학물질	유해물질 제거 또는 저독성물질로 대체 * 예: 메탄올→에탄올	국소배기장치 설치, 누출방지조치 등	작업절차서 준수, 작업환경 측정을 통한 노출관리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보안경 등 착용
인화성가스	인화성 완화* * 예: 아세틸렌→LPG	전기설비 방폭 조치 (점화원 관리), 가스검지기 · 긴급차단장치 연동 설치 환기 · 배기장치 설치	작업절차서 준수, 정비작업허가제 도입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밀폐공간	밀폐공간 내부기계ㆍ기구 제거 *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환기 · 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출입금지 표지설치, 작업허가제 도입, 감시인 배치	송기마스크



1. 재해 유형별 예방조치 방안

1) 떨어짐

- 위험요인 :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 · 대체
 - 설계·시공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 ②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 비계* 사용
 - * 규격화된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를 안정적인 구조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비계
 -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③ 개인 보호구
 -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 ·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2) 끼임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 위험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참고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 · 대체
 -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ㆍ동선 고려
 - ② 통제
 - (공학적) 기계 · 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 · 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 ·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중(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 · 기구의 정비 · 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등
 - *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 · 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
 - ③ 개인 보호구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3) 화재 · 폭발 재해 예방

- 위험요인 : 화재 · 폭밬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 화학물질별 위험성과 관리체계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해방 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 · 대체
 -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 ② 통제
 - (공학적) 용적작업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행정적)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③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4) 질식 재해 예방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 최근 10년 간('11~'20년) 밀폐공간 질식 재해자 316명 중 168명 사망(53.2%)

※ 밀폐공간

-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
-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18개 작업장소)
- * 산소결핍: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 ** 유해가스 :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등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재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 · 대체
 - 설계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밀폐 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 ② 통제
 - (공학적) 환기·배기장치 설치,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행정적)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작업허가제 도입,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 수칙 규정, 감시인 배치
 - ③ 개인보호구
 - 송기마스크 착용

2. 비정형작업 재해 예방

• 비정형작업

-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된 반복성 작업이 아니고,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서 이루어지는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
- (위험의 특성) ① 위험이 특정 기계·설비에 국한되지 않음 ② 생산 효율을 위한 전원 미차단이나 방호장치 부재 또는 해체. 안전절차 및 교육 부재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적 특성

• 비정형작업 재해예방 기법

- ①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 기계의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
 - * 전기 잠금장치, 스위치 잠금장치, 게이드밸브 잠금장치, 볼밸브 잠금장치, 자물쇠 · 걸쇠 등

Lock-Out(잠금장치)

기계 등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물쇠·열쇠와 같은 잠금수단에 이용되는 장치



Tag-Out(표지판)

표지판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가동하지 않도록 에너지 차단장치와 기계가 통제 되고 있음을 표시 하고 차단장치의 잠금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 되는 꼬리표와 같은 경고표지



-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 정지 → 전원차단 및 잔류에너지 확인 → 잠금장치 · 표지판 설치 →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 잠금장치 · 표지판 제거 → 재가동

② 작업허가제

- 고위험 비정형작업의 경우, 작업부서가 소관 상급부서 또는 안전부서의 허가·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는 안전관리 기법
- (절차) 안전작업허가 신청(작업자) → 안전조치 확인 및 허가(안전담당자) → 작업(작업자) 및 감독(안전담당자) → 완료확인 및 허가서 보존(안전담당자)

3. 화학물질 관리

1) 유해물질 관리

- 유해물질(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은 근로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므로 엄격한 관리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9(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및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참고
- 유해물질 취급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여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적정 보호구. 비상 시 대응요령 숙지 필요
- 직업성 암 유발물질 등은 원칙적으로 제조·사용 등 금지(산안법 제117조), 대체 불가능한 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필요(산안법 제118조)
- 관리대상유해물질(산업안전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장에 따라 사용
 - ▲ 사업주는 제조등금지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에게 정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참조
 - ▲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함
 -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 **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지원제도 활용가능

2) 위험물질 관리

- 화재·폭발 등의 원인이 되는 위험성을 가진 물질(위험물질')은 취급부주의 등에 따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 필요
- *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②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③ 산화성 액체·고체, ④ 인화성 액체, ⑤ 인화성 가스, ⑥ 부식성 물질, ⑦ 급성 독성 물질
 - 대규모 재난을 야기할 수 있는 51종*의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심사 및 이행 필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유해 · 위험물질 규정량' 참고
 -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필수 기재
- (기타)물리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 인자를 제거·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건기준(제3편') 준수 필요
- *소음·진동(제4장), 기압(제5장), 온도·습도(제6장), 병원체(제8장), 분진(제9장), 밀폐공간(제10장), 사무실(제11장), 근골 격계부담작업(제12장), 기타(제13장)

4-3. 종합대책 수립·이행

✔ 요구사항

구축 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총괄 위험관리계획 수립				
② 개선방안별 담당부서 등 지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 명확화				
③ 위험요인별 개선시기 및 위험요인 확인·제거 등을 위한 점검·정비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④ 경영자 또는 사업주의 검토 및 예산, 인력 등에 대한 배정방안 마련				
⑤ 개선전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완료 후 작업 재개하는 절차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⑥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 공유 및 이행 여부				
⑦ 개선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여부				

✔ 메모

실행 TIP

※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예시)

7		유해위험요	2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감소대책	개선후	담당자	X tio zei	T that mad	ot at the
Ŗ.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위험성	NO 세부내용		위험성	884	조치요구일	조치완료일	완료확인
	1. 기계(설비) 적 요인											
	2 전기적 요인											
	3. 화학(출절) 적 요인											
	4. 생물학적요 인											
	5.작업통성요 인											
	6. 작업환경요 언											

4-4. 교육훈련

✔ 요구사항

구축 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여부				
②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 참여토록하고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사업주 교육 등) 여부				
③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				
④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등에 관란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⑤ 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현황 파악, 추가 교육 실시 여부				

✔ 메모

실행 TIP

※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최저 교육시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시	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	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11 -110 11 70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	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나, 역합내용 건경 시 보육	일용근	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5 제1호라목제40호의 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t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타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작업 교육도 포함 (예) 항공안전법상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Ⅲ. 구축요건별 확인사항

연간교육계획

격	작성	검토	승인
결 재			

	교	육구	분	교육						일	정						대상	교육방법	
NO	안전 보 건	공정 안 전	수급 업 체	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인원 (명)		비고
1	0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0		0		0		0		0		0	30 명	집체(내부)	
2	0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0							발생시	집체(내부)	
3	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0								9명	집체(외부)	
4	0			특별안전보건 교육							0						5명	집체(내부)	
5	0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0						0		전 사원	집체(내부)	
6	0			물질안전보건 교육							0						2명	집체(내부)	
7		0		공정위험성 평가 교육									0				10명	집체(외부)	
8			0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0						발생시	집체(내부)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5-1. 중대산업재해 조치매뉴얼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여부				
② 매뉴얼에는 작업중지에 관한사항 및 불이익 조치금지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대한 내용 포함 여부				
③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노동관서 보고 및 재해발생장소에 대한 급박한 위험·여부 확인과 안전보건조치 후 작업재개 가능 여부				
④ 비상연락체계 및 기본적 응급조치 방안 포함 여부				
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통제, 유사사업장 정보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포함 여부				

✓ 메모

- ① 위험요인별로 발생 가능한 재해 형태(화재, 누출, 끼임, 떨어짐 등) 모두 고려
- *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을 검토
- ②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 * 설비결함, 운전원 조작 미숙, 비정상 운전상태, 기상상황 등 여러 재해 원인을 가정
- ③ 사업장(공장ㆍ현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 급박한 위험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 · 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 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2. 비상조치계획 및 대피훈련

✔ 요구사항

구축 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 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및 인력·시설·장비 포함 여부				
②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 및 상황보고·전파, 대응조직과 담당자의 역할 구분 여부				
③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및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여부				
④ 다양한 재해발생 시나리오에 대하여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해 비상조치계획 개선 여부(반기 1회 이상)				

✓ 메모

실행 TIP

※ 비상조치계획 관리 목록 예시

연번	부서	공정	설비, 장치명	유해, 위험 물질 (주1)	재해 유형 (주2)	원인 (주3)	비상 상황 (주4)	중요도 (주5)	피해가능 범위	교육, 훈련 주기
1	생산 1팀	A 공정	B설비	시안화 수소	누출	이상 압력 상승	A공정 B설비 이상 압력 상승으로 인한 균열로 시안화수소(독성물질) 누출	A등급	반경 1km	1회/년

- (주1) 해당 설비에서 비상상황의 원인이 되는 물질 기재
- (주2) 누출, 화재, 폭발, 정전, 유틸리티 공급중단,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 (주3) 균열, 부식, 압력상승, 폭주반응, 정전, 정비 작업 등
- (주4) 공정, 설비,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등을 종합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 (주5)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

※ 비상조치계획 훈련 평가 사항 예시

- 비상시 구성원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의 적절성 및 실제 작동 여부
- 재해 발생 상황을 전파하는 방법과 절차가 적정한지
- 현장에서의 조치사항(재해자 구호조치, 위험요인 제거 등)이 적절히 실행되는지
- 대피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대비 방법과 경로, 대피장소가 적절한지

화재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작성 예시

단계	조치절차	조치자	준비사항
업무분장	자위소방대장 : 본부장 자위소방 부대장 : 시설운영팀장 본부분대원 : 각 팀장 및 경영지원팀/ 안내데스크 소수방분대원 : 시설운영팀원 대피반 : 고객서비스팀원, 주차관리원 중앙감시실 : 시설운영팀원		
	 화재경보 발생 → 경보지역 근무자에 확인 요청(화재 시 3항 시행) 경보 및 화재발생 장소의 현장확인 점검 → 오보 안내 방송 비상벨 누름(경보기/육성: "불이야") → 본부분대 연락 초기 진화 실시. 내선 111, 222, 333 사업장에 설치된 적색전화를 통해 긴급연락 	중앙감시실 중앙감시실 최초발견자	감지기/ 경보설비 방송설비 소화기
	4. 긴급대피 방송 → 비상연락 및 화재신고 실시 → 방호장비 지급. - 화재신고: 국번 없이 119 (주소, 건물명, 인명피해 유무 등 자세히) - SNS를 통하여 동시 통보, 유,무선 연락, 무전연락 취함 - 안내(내선111,112):긴급 대피 방송 방호장비지급, 대피 유도, 엘리베이터 승객탑승 확인 후 정지 - 시설운영팀(내선111,222): 엘리베이터 정지, 전원차단, 무전지휘	본부분대원 소수방분대	적색전화(긴급) 방독마스크 장갑/무전기/ 소화기/전화기/ 안전모/메기폰/ 구급함/소화기/ 소화전
	5. 방재실 보호장구 착용 → 화재장소로 이동 → 화재 진압 - 소화기(분말, 하론)사용 소화전 사용시 전원 차단 확인 후 사용		젖은 수건/랜턴
화재 발생과 대응	6. 고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유도. - 기도보호(젖은 수건 및 담요), 휴대조명등 사용,낮은 자세로 이동 유도 - 지상층 화재 → 비상계단 → 건물 밖 탈출 → 건물 탈출 불가 시 옥상 이동 - 지하층 화재 → 건물 밖 탈출 우선 → 건물 탈출 불가시 지하3층 이동 → 가버너실 및 비상계단 탈출	대피반	
	7. 환자 발생 → 건물외부 / 옥상으로 환자이송 → 환자우선 구조	대피반	들것
	8. 119도착 및 화재진압 -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은 화재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황을 수시로 지휘하여 119소방대의 화재진압이 용이하도록 적극 협조 - 자위 소방대원은 고객이 전원 탈출한 후 대피를 실시 (화재로 접근이 불가할 경우 자위소방대원도 대피)		
	9. 현장복구 → 화재보고서 작성 * 참고 사항 (1) 화재발생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시설팀 근무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감지기 오보일 경우 감지기 수리를 점검 및 교체실시를 하고 방송실에 연락하여 상황을 방송	자위소방부대장 중앙감시실	
	(2) 전관방송 매뉴얼에 따른 화재발생 긴급 대피 방송 (정전 시 메가폰사용) (3) 사고조사가 끝나고 자위소방대장의 현장복구 업무를 지시 받은 시설운영팀장은 자위소방대원들의 협조 하에 복구업무를 수행 (4) 상황종료 후 시설운영팀장은 화재보고서 작성	본부분대 시설운영팀장	
보호장비	비치장소 : 1층 방재실 장비품목 : 방독마스크, 들것, 소화기, 코팅장갑, 안전모, 메가폰	시설운영팀장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결 재		
재		
	/	1

 훈련명		훈련일시	
훈련장소	i	훈련 주관부서	
참석인원		사용기자재	
훈련내용			
훈련결과 및 성과강평			
	문제점		개선사항
문제점 및 시나리오 등 개선사항			
차기계획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6-1. 사업장 선정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 실시				
②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점검 및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적정 공사기간(건조기간) 검토 후 비용 지급여부, 해당 사업이 적정 기간에 이루어지는지 점검 실시 여부(반기1회 이상)				
③ 도급·용역·위탁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건조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④ 도급·용역·위탁시 도급·용역·위탁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적정 공사기간(건조기간)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 해당 사업이 적정 기간에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1회 이상)				

✓ 메모

실행 TIP

- ① 도급 · 용역 · 위탁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
- ② 도급 · 용역 · 위탁 시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 ③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 보장

도급·용역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 사업장 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o 도급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o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 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o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 위험요인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o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o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o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o 도급 ·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o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o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6-2. 안전보건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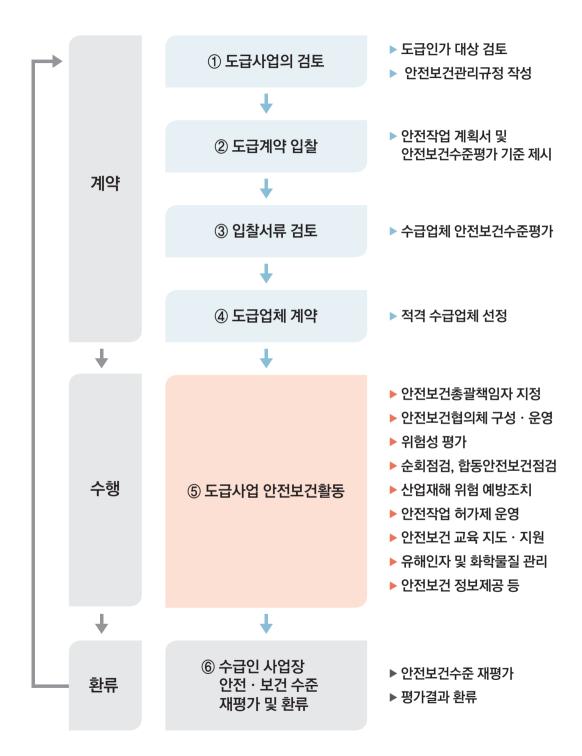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변경 시 즉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공				
②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도급인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③ 도급·용역·위탁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실시하는지 여부				

✓ 메모

실행 TIP

- ① 도급 · 용역 · 위탁 시 제공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예시
 -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안전 ·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
- ② 관리 · 감독 절차 예시
 - -(선정시)도급 \cdot 용역 \cdot 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 (작업전)도급 \cdot 용역 \cdot 위탁 받는 자의 위험성평가 검토
 - (작업시)작업허가, 순회점검
 - (작업완료)평가에 반영



07 평가 및 개선







7-1. 성과 평가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목표·세부계획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지 여부				
②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보건에 관한 성가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 메모

실행 TIP

※ 성과평가 결과 작성 예시

(/ 4분기) 성과평가 결과

□ 안전보건 목표 달성 및 활동 계획 이행 여부

목표	달성여부	활동 계획	이행여부	미이행 원인	향후 계획

Ⅲ. 구축요건별 확인사항

안전보건활동 목표 / 세부 추진 계획

격	작성	검토	승인
결 재			

전사				추진일정					예산	달성율		
목표	목표 / 세부추진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성과지표	담당부서	에건 (만원)	(%)	실적 / 부진사유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0				1회/년 이상	전부서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0,111900,1	실적	_	_	_	_	14/2 16	LTM	500	10070	3/20 30/11 8 8 2/1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실적	0	0	0	0	수시	전부서		5건	- 4/15 1공장 라인증축 등 5건	
	그이칭 게서	계획	0	0	0	0	개선이행	저머니	_	1000/	그이희 20건 개 서이그	
	고위험 개선	실적					100%	전부서	_	100%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아차사고수집	계획 실적	0	0	0	0	1건/월/인당	안전	-	50%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참여 독려을 위한 이벤트추 진예정	
			_	_	_	_					건에당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실적	0	0	0	0	6시간/분기 (60명)	전부서	100		-매월 2시간 교육실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실적			0		16시간/년간 (10명)	안전	50	100%	-9/20(1공장 3명) -9/21(2공장 7명)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계획 실적			0		16시간/년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50	100%	-9/10 크레인 작업자(10명) -9/11 물질취급자(5명)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시)	계획 실적	0	0	0	0	8시간/년간 (채용시)	전부서	30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실적	0	0	0	0	2시간/년간 (유해물질 취급자)	전부서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획 실적	0	0	0	0	1회/분기	안전	-			
	작업표준 제ㆍ개정		0	0	0	0	변경시	안전	-			
산재 사고 -	안전검사	계획 실적			0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베이어 30대)	안전	50		-9/5 안전협회 실시	
Zero	계측기 검교정	계획 실적	0		0		1회/반기 (공기호흡기, 감지기)	안전	100		-3/10 공기호흡기10개 -10/5 감지기 50개소	
근로	소방시설 정기점검	계획 실적	0	0	0	0	1회/월	안전	-			
손실 일수	합동안전점검	계획 실적	0	0	0	0	1회/월	안전	-			
Zero	일반 건강검진	계획		0			1회/년 (관리직 1회/2년,	안전	500		-5/10~20 60명 실시	
		실적 계획		0			현장직 1회/1년)					
	특수 건강검진	계획 실적		0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300		-5/10~20 45명 실시	
	배치전 건강검진	계획 실적	0	0	0	0	해당시	안전	-			
	유소견자 사후관리	계획 실적	0	0	0	0	5명/월	안전	-			
	비상조치훈련	계획	0	0	0	0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30	75%	-2/10 화재진압 훈련 -4/15 가스누출 대비	
		실적 계획	0	0	0	0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작업허가서 발부	실적					단위 작업별	전부서	-			
	TBM 실시	계획 실적	0	0	0	0	단위 작업별	전부서	-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실적	0	0	0	0	1건/월/인당	전부서	-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실적	0	0	0	0	수립예산 이행	전부서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실적		0		0	1회/반기	전부서	-			
	시정조치 이행	계획 실적	0	0	0	0	수시	전부서	-			
	경영자검토	계획 실적				0	1회/년	안전				

7-2. 체계 점검 및 개선

✔ 요구사항

구축기준	미흡	보통	양호	비고 (해당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정기적 (반기 1회 이상)으로 확인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대행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음				
④ 평가 및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조치계획)은 경영층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 전파 여부				
⑤ 도출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원(인력, 예산 등) 배정 여부 및 개선시기, 담당, 예산 · 인력 배정안이 포함된 조치계획 수립 여부				

✓ 메모

실행 TIP

※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 의무: 반기 1회 이상

- ①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 ② 최고경영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제5호)
-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지 점검(제7호)
- ④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는지 점검 (제8호)
- ⑤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기준·절차가 작동하는지 점검(제9호)

개선조치 (□ 요구 □ 결과) 보고서

작성	검토	승인

대상 부서			작성일자	
구분	□ 성과평가	□ 체계점검 □	경영자 검토 □ 기타()
부적합사항				
조치요구사항				
권고사항				
내부점검자 (내부점검 시)		(인)	담당자 (내부점검 시)	(인)
시정조치 일정				
시정조치 방안				
완료(예정)일자				
첨부 내용	□ 있음	□ 없음	관리감독자 확인	(인)
조치내용 확인		□ 적합	□ 부적합	
조치내용 부적합 사유				

IV 참고자료







참고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신청서 양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지원신청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설 립 일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직책: 성명: 연락처:					
급 당 자	이메일: @ 팩스:					
상시근로자수	명					
협력업체 현황	사내 협력업체: 개소 사외 협력업체(개소)					
산재현황	3년간 사고성재해 현황: 명 3년간 사고사망사고 현황: 명					
	1년간 사고성재해 현황: 명 1년간 사고사망사고 현황: 명					
2. 안전보건관리체	ll제 및 위험요인 보유 현황					
다음 항목별 해당하	는 사항에 모두 체크() 및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안전보건 경영방침】 □ 수립 □ 모름 【안전보건 전문인력】 □ 구성·운영 □ 미구성 □ 해당 없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명) □ 관리전문기관(기관명:)) □ 안전관리자(명) □ 보건관리전문기관(기관명:)) □ 보건관리자(명) □ 보건관리전문기관(기관명:)) 【안전보건관리규정】 □ 작성 □ 미작성 □ 해당 없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위촉 □ 매라 □ 매작성 【위험요인 리스트】 □ 작성·관리 □ 작성 후 미관리 □ 미작성					
위험 기계	【각 위험기계 안전대책】 □ 실시 □ 미실시 □ 모름/해당 없음 【각 위험기계 방호조치】 □ 조치/관리 □ 미관리 □ 모름					
작업 추락 【추락 위험작업 관리】 □ 관리 □ 미관리 □ 해당 없음 □ 모름 한경 끼임 【끼임 위험작업 관리】 □ 관리 □ 미관리 □ 해당 없음 □ 모름 관리						
관리 보건 【작업환경측정】 □ 관리 □ 미관리 □ 없음 관리 【건강검진】 □ 관리 □ 미관리 □ 없음 / 【밀폐공간】 □ 관리 □ 미관리 □ 없음						

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ㅇ광역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장 귀하

참고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보고서 작성 양식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	근로자수(본사/현장)	00명 (00명 / 00명)

2. 방문일자 및 참여자 현황

방문일자		사업장 참여지	공	단 담당자		
(0회차)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성명	전화번호	
202	000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000	000-000-0000

3. 공정 및 유해 · 위험요인

공정명	주 작업내용	유해 및 위험설비	잠재위험성 (끼임 · 추락 · 부딪힘 등)

[※] 공정이 복잡한 경우, 주요 공정에 한하여 간략히 작성

4. 총평

5. 7대 핵심요소별 점검사항

H 01	관련 조항	N 74 III O	적정여부				
분야	선인 조망	점 검 내 용 	미흡	보통	양호		
		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방침)를 밝히고 목표를 설정					
	시행령	① 안전보건 목표(비전)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는가?					
	제4조제1호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③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진이 주재하는 방식의 간담회, 회의 등 소통활동이 운영되고 있는가?					
1.		나. 안전보건에 필요한 필요한 자원(업무담당자 지정 및 예산 반영)을 배정	·				
7. 경영자 리더십	시행령 제4조제4호	회사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업무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① 지정하고 있는가?					
	~6호	* (20인~49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5~19인) 관리감독자					
		② 위험요인을 제거 · 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 · 장비를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가?					
		다.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					
	시행령 제4조제5호 시행령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경영자, 관리자 등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100	②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보장, 인센티브 제공 등)하고 있는가?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					
		①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 및 참여절차를 알리고 있는가?					
		② 사업장에서 공개하는 안전보건 관련 정보에 대해서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는가?					
2.	시행령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근로자 참여	제4조제7호	①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					
		②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		,			
		① 구성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정리					
3. 위험요인	시행령	① 현장작업자(하청업체 등 포함)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절차를 마련해 파악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 정리하고 있는가?					
파악	제4조제3호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					
		①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발생시 이를 조사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해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На	2124 22	71.71.11.0	적정여부			
분 야	관련 조항	점 검 내 용	미흡	보통	양호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를 파악				
		① 사업장 내 모든 기계, 기구 및 설비를 파악해 관련 위험성을 구성원에게 공유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가?				
		② 보유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사업장내 위생 및 건강 유해인자를 파악				
3. 위험요인 파악	시행령 제4조제3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관련 유해성을 ① 구성원에게 공유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가? * 화재·폭발·누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건강 위해물질, 소음 등 물리적 인자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				
		① 작업내용(형태)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② 폭발위험, 밀폐공간, 추락 등 고위험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				
		①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위험요인을 발굴해 각각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는가?				
		위험요인별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	•		•	
		①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을 적절히 검토하고 있는가?				
		② 위험요인 개선방안 마련 시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검토가 이뤄지는지?				
4. 위험요인	시행령	③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및 운전조건 등 변경 시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갖고 위험요인을 통제하고 있는가?				
제거 · 대체 및 통제	제4조제3호	④ 위험작업에 대하여 작업허가절차를 운영하는가?				
		⑤ 기계설비에 대한 정비ㆍ청소ㆍ수리 등의 비정형 작업시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①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모든 구성원에게 이를 공유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교육훈련을 실시				
		근로자에게 유해ㆍ위험작업, 위험성평가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①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교육미참석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추가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Ноь	시해 저라		72 III O	적정여부						
분 야	실행 전략		점 검 내 용 	미흡	보통	양호				
		재해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	Ţ		r				
5.	시행령	1	위험요인으로 인한 재해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비상조치 계획수립	제4조제8호	비상: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							
		1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구성원의 역할과 대피방법 등을 교육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조치계획을 개선하고 있는가?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도급 · 용역업체를 선정	'						
		1	도급 · 용역 · 위탁 등 계약 시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시행령 제4조제9호	2	도급 · 용역 · 위탁 시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가?							
6. 도급 · 용역 ·		3	도급 · 용역 · 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을 검토하고 보장하는가?							
위탁시 안전보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영								
확보		1	도급 · 용역 · 위탁 시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2	도급 · 용역 · 위탁받은 업체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3	도급 · 용역 · 위탁 시 관련 작업을 관리 · 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안전.	보건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							
		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7.		안전.	 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l					
,. 평가 및 개선	시행령 제5조제2호	1	현장에서 안전보건 실행계획 및 내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가?							
		발굴	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1	평가,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 경영자 보고 및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6. 7대 핵심요소별 기술지도 사항

기술지도 사항

- 1. 경영자 리더십
- -(현황)
- (문 제 점)
- (개선방안)
- 2. 근로자의 참여
- 3. 위험요인 파악
- 4. 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
- 5. 비상조치 계획수립
-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7. 평가 및 개선

[※] 상기 제시된 기술지도 사항은 지원 당시 사업장 현장 상태 및 구축수준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보고서에서 기술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 · 발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 사업장 및 사업주 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이 취득한 다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정보이며, 우리 공단에서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안전보건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활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연락, 안전보건 자료 송부, 고객만족 마인드 제고를 통해 향상된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식별 정보 :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 사업장 식별 정보 :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 즉시 ▷ 기술지도일이 속한 날의 연도를 포함한 3년 동안 보관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즉시 파기
☞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사업에 선정된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산재예방에 관한 안전보건자료 등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안전보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 년 월 일 ○ 방문사업명 : 산업안전 현안 적시대응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구축 길잡이)

(서명)

○사업장명:

○ 사업주(담당자):

참고 3: 요소별 핵심 질문 및 개선방안

핵심요소	핵심질문 (사업주에게 질의)	개선방안
1. 경영자 리더십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지?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절차 및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있는지? 회사의규모, 위험요인 등에 적합한 자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가 주재하는 회의가 있는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중요 가치로 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장에 게시 본사, 사업부서별, 공장별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 위험요인 제거 · 대체 및 통제를 위한 부서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원 배정 부서별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지정 사업주가 주관하는 주기적인 안전보건회의 실시
2. 근로자의 참여	 안전보건에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지?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 게시 위험요인 파악, 제거 · 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평가 및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활동에 근로자 참여 TBM, 신고 및 제안 절차 마련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근로자 참여 유도
3. 위험요인 파악	 보유하고 있는 기계 · 기구 및 유해 · 위험 현황을 알고 있는지? 산업재해 · 아차사고를 조사하는 절차가 있는지? 위험장소를 별도로 관리하는지? 작업방법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는지? 	 기계 · 기구 · 설비관리대장및유해 · 위험물질관리대장작성 산업재해 · 아차사고 등 조사절차 마련 밀폐공간, 화기위험 장소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작업허가제 실시 등 작업절차 마련 현장 근로자 참여를 통해 작업방법 확인 및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 · 대체및 통제	 파악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지?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는지? 보유하고 있는 기계ㆍ기구 및설비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절차가 있는지? 새로운기계ㆍ기구ㆍ설비도입,화학물질변경,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화 시 안전을 고려하는지? 안전작업절차가 수립되었는지? 작업허가제도 및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하는지? 위험요인 및 제어, 작업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기계 · 기구 · 설비의위험성 · 중요도등을고려한점검 · 정비 주기 설정 '산재사고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고려하여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지도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시 행정적 통제 및 보호구 착용등 임시적인 방안이 아닌 공학적 통제 이상의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도 새로운 기계 · 기구 · 설비 도입,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화 시 검토절차 운영 작업절차서에 안전이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이를 고려하도록 지도 작업허가제도 및 LOTO(Lock Out, Tag Out) 절차 도입 연간 교육계획 수립

핵심요소	핵심질문 (사업주에게 질의)	개선방안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했는지? ●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지? 	 사고시나리오 목록을 마련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훈련하도록 지도 훈련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조치계획을 수정하는 등 개선하도록 지도 위험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가 가능하도록 세부절차 마련
6. 도급 · 용역 ·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도급 · 용역 · 위탁시 안전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을 검토하고 보장하는지? 도급 · 용역 · 위탁 시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는지? 각 업체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도급 · 용역 · 위탁 시 관리감독하는 절차가 있는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예시를 안내하여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 도급사업 시 사전에 사업장내 위험요인, 비상시 대응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도(도급 · 용역 · 위탁 시 외부업체용 정보제공자료 작성) 안전보건 협의체 등 도급 · 용역 · 위탁 시 수급인 의사전달체계를 마련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성과평가)? 현장에서 내부규정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지(자체감사)?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 아차사고 발생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지? 	 목표에 따른 성과를 측정 · 평가하고, 목표설정과 평가지표가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활동별 계획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중대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점검 절차를 두어 재해발생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도록 유도 평가 및 개선에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필수로 참여토록 규정화 다음해 안전보건활동계획에 반영

참고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업무절차(예시)

✓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안전보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 설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00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안전보건 방침의 승인, 경영검토를 통하여 안전보건 방침의 유효성 검증

3.2 관리부서장

- (1) 안전보건방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수립·실행, 문서화 및 유지
- (2) 안전보건 방침의 제 · 개정의 필요성 검토 및 검토 안 작성
- (3) 안전보건 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홍보, 전달
- (4)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방침 요구 시 이를 통보

3.3 부서장/현장소장 등

소속 직원이 안전보건 방침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 실시, 안전보건경영의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반영 추진

3.4 근로자

안전보건 방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규. 규정을 준수

4. 업무 절차

- (1) 안전보건 방침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수립한다.
 - ① 조직의 안전보건 위험성의 특성과 조직규모 부합
 - ②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의지 포함
 - ③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위험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④ 조직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 또는 공개
 - ⑤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 검토
 - ⑥ 안전보건방침을 간결, 명확하게 문서화, 시행일과 대표이사의 서명 포함
- (2) 안전보건 방침의 제정 또는 개정은 다음에 의한다.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방침의 제·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개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과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① 신규 사업이 개시될 시
- ②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발생 시
- ③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한 대표이사의 의지가 바뀌어 지시가 있을 시
- ④ 중대재해 발생 시

- ⑤ 대표이사 변경 시
- ⑥ 기타 안전보건 방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 (3) 대표이사의 공표로 확정된 안전보건 방침은 매뉴얼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 (4) 최고경영자는 안전보건 방침이 전 임직원 및 해당 협력업체 직원이 숙지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 전달한다.
 - ① 게시판 부착
 - ② 공문을 통한 시달
 - ③ 기타 유효한 방법
- (5) 해당 부서장 및 현장소장은 안전보건 방침을 전사원이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한다.
- (6) 대표이사는 매년 경영검토 회의를 통하여 안전보건방침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 (7) 최고경영자는 이해 관계자가 회사의 안전보건 방침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한다.
- (8)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 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안전보건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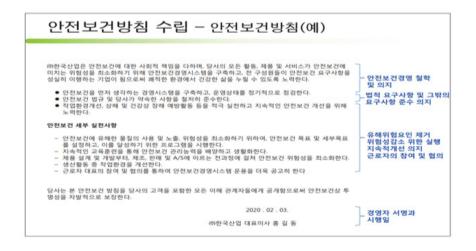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사원의 안전보건은 기업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 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 1.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ㆍ이행한다.
-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3. 전 사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4. 전 사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 년 월 일

00 회사 대표이사 (서명)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 (1) 안전보건경영 정책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승인
- (2) 부서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승인

3.2 관리부서장

- (1)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본 자료 제공 등 모든 활동 주관
- (2) 각 부서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고, 승인된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에 통보
- (3) 안전보건추진 운영전반의 성과의 측정, 실적관리업무

3.3 각 부서장

- (1) 안전보건 목표 설정과 관련된 부서 내의 기본 자료 발굴
- (2)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별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 (3) 승인된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 운영

3.4 근로자

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법규 등을 준수

4. 업무 절차

4.1 안전보건 목표의 수립

4.1.1 안전보건 목표의 설정

- (1) 안전보건목표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법률 및 그 밖의 요구사항 ②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각종지침
 - ③ 사업장의 우수 안전보건 실천사례 ④ 안전보건경영체제 운영을 위한 보유자원활용과 효율성
 - ⑤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 등
- (2) 안전보건 전체 목표 및 부서별 목표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부합되도록 하며, 가능한 정량화함으로써 감사 및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설정한다.
- (3) 설정된 안전보건목표는 관리부서장이 각 부서별로 배포한다.
- (4) 안전보건목표는 각 부서별로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측정을 한다.

4.1.2 안전보건 목표의 변경

안전보건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4.2 안전보건의 추진계획

4.2.1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 (1) 추진계획은 방침 실행을 위하여 계층별로 책임자의 선정, 책임과 권한을 포함한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일정을 기술한다.
- (2) 각 부서장은 부서의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3) 부서장은 각 부서의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취합·검토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 ① 안전보건목표 ② 개선내용 ③ 성과지표 ④ 추진일정 ⑤ 우선순위
 - ⑥ 담당부서 ⑦ 소요 예산 등
 - (4) 수립된 활동 추진계획은 관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4.2.2 추진계획의 운영 및 감시

- (1)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보건개선을 추진하되,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주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2) 추진계획은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내부감사를 통하여 점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3) 관리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성과를 관리하고 개선성과를 취합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 (4) 안전보건활동추진계획에는 회사의 안전보건 목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4.2.3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변경

- (1)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의 변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목표를 변경하는 경우
 - ②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체제를 변경하는 경우
 - ③ 안전보건 내부심사 결과 추진계획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④ 안전보건 성과측정 결과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⑤ 당사 또는 동종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⑥ 당해 연도중 사전 위험성평가결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경우 등
- (2) 상기 사유의 발생시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활동 추진 계획의 수립절차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붙임 2〉 목표 및 추진계획 필수기준

✓ 〈붙임 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전사목표	추진계획	목표	실적	성과지표	일정	담당자	소요예산(천원)	비고(참고서류)
산업								
재해								
Zero								

✔ 〈붙임 2〉 목표 및 추진계획 필수 고려사항

1. 목 적

- 1.1 사업장은 작업부서별(또는 작업단위, 계층별) 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 한다.
- 1.2 사업장이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안전보건활동수준평가결과, 위험성 평가결과, 법규 등 검토사항과 안전보건활동상의 필수적 사항(교육, 훈련, 성과측정, 내부심사) 등이 반영되도록 한다.
- 1.3 안전보건활동은 안전보건방침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안전보건활동별로 목표를 정한다.
- 1.4 목표를 수립 시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적 · 물적 지원 범위와 크기를 반영한다.
- 1.5 목표는 실행 가능한 경우,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상해 및 직업병 예방 및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지속적 개선의 의지가 포함된 안전보건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1.6 조직이 안전보건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할 때, 조직의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그 밖의 요구사항 및 조직의 위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의 기술적 대안, 재정적, 운영적 및 사업상의 요구사항과 이 해관계자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 1.7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조직의 관련 기능과 계층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및 권한을 지정
 - 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일정
- 1.8 추진계획은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계획된 주기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시 조정되어야 한다.

2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 2.1 사업장은 안전보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추진계획을 해당업무(작업), 단위별(팀별, 부·과별)로 다음 사항을 수립하고 문서화 하여 실행한다.
 - ① 조직의 전체 목표 및 부서별 세부목표와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책임자 지정
 - ②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수단·방법·일정)
 - ③ 안전보건활동별 성과지표
- 2.2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조직의 운영변경 또는 새로운 계획의 추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정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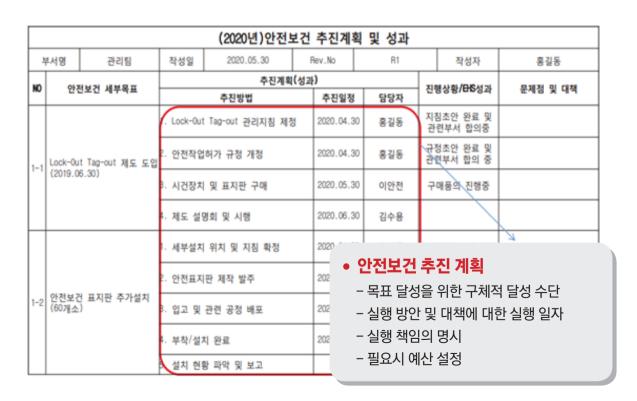
✓ 안전보건 목표, 세부목표 작성예시

안전보건 목표	세부목표 (예)
1. 위험성평가 관리 강화 1.1 현장 위험개소 설비 보완 00개소 1.2 현장 정리정돈 및 안전보건표지판 설치 보완 00개소 1.3 작업장, 운송장비, 보행통로 확보 및 식별 강화 00개소 1.4 Interlock 및 방호장치 개선 00개소	* 00공정 방호장치 00개소(00.00.00까지) * 00공장 Inter-lock 장치 00개소 설비 보완 (00.00.00까지) * 00공장 안전표지판 부착 00개소(00.00.00까지) * 00공정 보행통로 00미터 확보(00.00.00까지) * 00공정 중량물 취급 안전표지판 부착 00개소 (00.00.00까지) * 00공정 안전가드 설치 00개소(00.00.00까지) * 00공정 개구부 안전방망 설치 00개소 (00.00.00까지)

안전보건 목표	세부목표 (예)
2. 화학물질관리 체계 강화 2.1 GHS를 적용한 MSDS 작성 및 비치 00건 2.2 화학물질 평가/등록제도 장착	*00 물질에 대해 GHS 적용한 MSDS 비치 (00.00.00까지) *00공정에 대한 방폭설비 완비(00.00.00까지) *00공정에 대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완료 (00.00.00까지) *00개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 (00.00.00까지) *실험실의 00개 물질에 대한 식별 표식 부착 (00.00.00까지) *0공정 작업장 00개소에 대한 화학물질 경고묘지판 부착(00.00.00까지) *유독물/위험물 안전밸브 교체 00개소 (00.00.00까지) *MSDS 검토 00개소 및 보완(00.00.00까지)

안전보건 목표	세부목표 (예)		
3.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업환경 개선 3.1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강화 3.2 작업자 청력 및 시력 보존 프로그램 도입	● 00공정 작업대 00개 교체(00.00.00까지) ● 00공정 인간공학 적용 의자교체(00.00.00까지) ● 00공정 소음발생공정 차폐막 설치(00.00.00까지) ● 00공정 설비교체 및 소음 저감: 95dB → 85dB(00.00.00까지) ● 00공정 00개소 인공눈물 비치(00.00.00까지) ● 00공정 시력보존프로그램 도입(00.00.00까지) ● 00공정 00설비 교체(00.00.00까지) ● 00공정 요통체조 보급 및 스트레칭 실시 − (00.00.00까지) ● 00공정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개선 프로그램 수립(00.00.00까지) ● 00공정 금연율 제고: 50% → 90%(00.00.00까지) ■ 실혈관계실한 위험성 평가 및 개선프로그램 도입(00.00.00까지)		

안전보건 목표	세부목표 (예)
4.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4.1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훈련 확대 4.2 비상장구 및 방재장치 점검 강화	• 00공정 비상훈련: 강화 0회/분기 → 0회/분기 (00.00.00까지) • 00공정 소방설비 교체 00개소(00.00.00까지) • 00 관련 비상대응 계획 수립(00.00.00까지) • 00공정 비상시 안내판 교체 00개소 (00.00.00까지) • 00 비상시 비상연락망 완료시간 단축: 00분 → 00분(00.00.00까지) • 00광정 비상시 대피시간 단축: 00분 → 00분 (00.00.00까지) • 00공정 이이바장구 확충 00개(00.00.00까지) • 00공정 00비상장구 확충 00개(00.00.00까지)



✔ 안전보건 조직의 권한 및 책임부여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00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조직과 업무분장을 승인한다.

3.2 관리부서장

- (1)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을 계획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공포
- (2) 개인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3.4 각 부서장/현장소장

개인별 업무분장을 수립하고 부서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훈련을 실시 및 평가

3.5 근로자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각 부서장/현장소장에게 보고

- ※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조직도는 〈별표 1〉과 같으며, 조직의 책임과 권한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안전관리 규정과 업무분장표에 정한다.
- ※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에서는 통상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각 직위자는 차하위자에게 자신의 직무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

4.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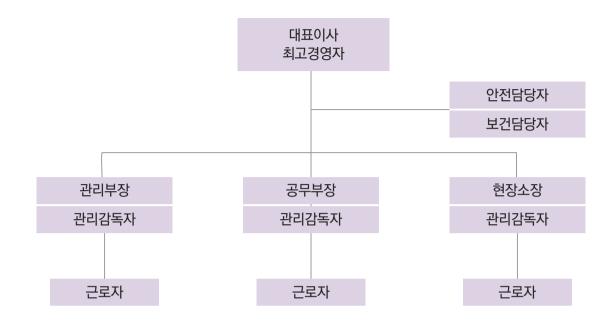
- (1) 대표이사는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생산품(서비스 포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직(부서)을 구성한다. 대표이사는 부서장을 선정한다.
- (2) 대표이사는 관리부서장,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직도를 작성하고 부서별 업무분장을 수립한다.
- (3) 각 부서장은 개인의 역량, 경험, 자격, 학력,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업무분장을 수립한다.
- (4) 각 부서장은 개인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외부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교육훈련을 요청한다.
- (5) 관리부서장은 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후 성과를 측정한다.
- (6) 관리부서장/각 부서장은 내부 교육훈련 실시 후 근로자 대상 만족도를 조사한다.
- (7) 관리부서장은 조직도와 부서별 업무분장을 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공개한다.
- (8) 관리부서장은 자격면허가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여 유자격자를 양성, 유지하고 그 기록을 관리한다.
- (9) 대표이사는 조직의 개편이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관리부서장,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조직의 개편을 검토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조직도

〈붙임 2〉 위임전결표

✓ 〈붙임 1〉 조직도(예시)



✓ 〈붙임 2〉 위임전결표(예시)

서식명	작성	검토	승인
매뉴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절차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안전보건활동 관련 지침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작업안전수칙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각 부서장	관리부장	대표이사
위험성평가실시 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위험성평가표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위험성평가결과 개선계획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위험성평가결과 개선결과	각 부서장	관리부장	대표이사
법령개정목록 및 요지 게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조직도 및 업 무분 장	각 부서장	관리부장	대표이사
~ 자격면허등록대장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관리부장
연간 교육훈련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교육일지(공통)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서식명	작성	검토	승인
보호구지급대장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물질안전보건자료목록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관리부장
비상대응훈련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비상대응훈련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시정요구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준수평가	각 부서 담당	안전보건담당	각 부서장
내부심사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내부심사표	심사원		심사팀장
시정요구서	심사원		심사팀장
조치결과보고서	각 부서담당		각 부서장
내부심사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경영자검토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산재조사표 및 재발방지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대표이사
재발방지조치결과	각 부서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대표이사
월간 안전보건상태보고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안전보건순찰(점검)표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개최 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회의록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근로자대표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치결과보고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근로자대표	대표이사
장비목록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장비이력대장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자체점검표	각 부서 담당		각 부서장
위험기계 안전검사 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작업환경측정 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건강진단 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계획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개선계획 및 결과	안전보건담당	관리부장 각 부서장	대표이사

✔ 안전보건 조직의 권한 및 책임부여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경영 활동 등을 조직 내·외부에 알리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정보 및 요구사항을 접수, 문서화하고 회신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의장
- (2) 주요 현안 사항 총괄, 사장단 회의 참석

3.2 관리부서장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운영
- (2) 안전보건 민원 관련 업무를 우선 수행
- (3) 비상사태 및 기타 사고 시에 관련 기관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절차 수립
- (4) 조직 내 여러 계층 간의 내부 의사소통과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민원 접수, 문서화 및 회신을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
- (5) ○○○○ 등 이해 관계자의 안전보건 민원 접수, 처리결과 통보

3.3 근로자

내부 의사소통을 위해 참여와 협의

4. 업무 절차

4.1 내부 의사소통

- (1) 각 부서는 해당분야의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및 건의사항을 관리부서장에 송부한다.
- (2) 관리부서장은 조직 내에서 접수된 안전보건경영활동 결과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검토한다.
- (3)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경영체제 감사와 경영자검토 결과를 조직 내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전달한다.
- (4)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방침 및 정책, 결의사항 등을 교육, 훈련 및 기타방법(사보, 게시판, 공고간행물, 회의, 사내 전산망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린다.
- (5) 의사소통은 전화, 우편 및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자는 필히 열람하여 응대한다.
- (6) 각 부서장은 안전사고 및 긴급사태시 안전보건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하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7)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한다.

4.2 외부민원 접수 및 전달

- (1) 각 부서장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 민원을 접수하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2) 관리부서장은 문서관리부서장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안전보건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이를 정리 및 분석하여 조치한다.
- (3)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부서에 발생내역을 통보하여 발생원인 파악 및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문서번호 부여방법

 안전
 - 22
 - 001
 관리
 - 22
 - 001

 부서명
 연도
 일련번호
 부서명
 연도
 일련번호

- (5) 관리부서장은 사내 · 외의 각종 안전보건 정보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6) 관리부서장은 외부 의사소통 내용을 기록 · 보관한다.
- (7) 관리부서장은 외부 의사소통 내용 중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문서등록대장 〈붙임 2〉 안전제안 양식

✔ 〈붙임 1〉 문서등록대장(예시)

문서등록대장

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자	수신	발신	담당부서	비고

✓ 〈붙임 1〉 안전제안 양식(예시)

	제인	제안일자			
제안자			확인자 (회사작성)		
제안사유					
제안효과					
		이하호	l사 작성		
담당자		처리일자		처리결과	

✔ 문서관리 운영절차

1. 문서화 및 문서관리 절차

- (1) 문서는 해당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① 관리 문서의 식별
 - ② 승인 및 발행에 앞선 문서의 적절성 심사
 - ③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발행 책임이 있는 인원, 직책 또는 조직의 식별
 -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되어야 할 문서의 식별
 - ⑤ 관리본, 비관리본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식별하여 적합한 문서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확인
 - ⑥ 최신본 배부 목록의 유지
- (2) 문서의 작성, 개정, 승인 및 관리는 문서관리규정과 업무 분장에 따른다.
- (3) 문서는 회사의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4) 문서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작성된 문서는 그 문서에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그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 (5)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효과적인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 관련 문서의 최신판을 비치한다.
- (6) 법규 또는 지식보전 목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모든 구문서와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 (7) 문서는 읽기 쉽고, 즉시 식별가능하며, 날짜순으로 순차적으로 유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한다.
- (8) 개정된 문서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최초에 심사하고 승인한 조직에 의해서 검토 및 승인한다. 별도로 지정된 조직은 해당문서의 심사와 승인의 근거가 되는 종전의 검토, 승인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9) 개정된 문서의 변경된 사항은 해당문서 또는 부속 문서에 의해 식별한다.
- (10) 발행된 문서 등은 승인된 최신본이 사용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의 식별번호 또는 배부대장, 가제표 등에 의해 최신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11) 구문서는 즉시 모든 발행 장소 및 사용 장소에서 신속히 회수하거나 달리 사용 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 (12) 개정문서 및 자료 배부시 구 문서는 각 발행처 및 사용처에서 즉시 회수하여 오용을 방지하고, 보존용 또는 참고용 구문서는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 비상조치계획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회사의 안전보건과 연계하여 발생 할 수도 있는 사건이나 비상시에 대비한 조직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00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 및 조치 업무 승인

3.2 관리부서장

- (1) 비상사태 발생시 부서간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조치 및 현황을 파악하여 대표자에게 보고
- (2) 비상사태의 관련기관에 통보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응 훈련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 개정
- (3) 대피로, 비상구, 비상등, 소화기 등 비상 관련 시설의 수요를 파악하고 설치
- (4)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개정 및 공개

3.3 각 부서장/현장소장

- (1)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안전보건 비상사태를 식별,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표준을 수립,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
- (2) 모기업에서 시행하는 비상대응훈련에 적극 참여
- (3) 대피로, 비상구, 비상등, 소화기 등 비상 관련 시설을 점검, 유지, 보수, 관리
- (4)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지원, 현장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4. 업무 절차

4.1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및 대책

- (1) 회사의 모든 조직은 안전보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잠재적인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유지해야 한다. 운영 및 관리절차의 검토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 ① 사고 재발 가능성
 - ② 사고로 의한 화재 및 폭발과 같은 2차재해 발생 가능성
 - ③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2) 긴급대책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발생 가능한 사고를 고려한다.
 - ① 긴급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 ② 핵심 요원의 목록
 - ③ 긴급 활동의 세부사항
 - ④ 내부 및 외부에 대한 긴급 상황 통보계획
 - ⑤ 2차 재해발생에 대한 대책 및 화재, 폭발 등의 사고시 취해야 할 조치
- (3) 비상시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 보유현황

- ② 사고발생 시 각 부서 ·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③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 ④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 ⑤ 비상시 대피절차와 재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절차
- ⑥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과 대응 · 홍보 방안
- (4) 비상사태별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한 비상사태는 다음과 같다
 - ① 유해위험물질 누출
 - ② 화재, 폭발
 - ③ 감전, 끼임, 추락, 충돌, 붕괴, 중독, 질식, 뇌졸중, 심장발작 등 작업장 내외 재해
 - ④ 교통사고

4.2 비상시 대비 및 대응훈련

4.2.1 훈련 일반 절차

- (1) 관리부서장 및 각 부서는 비상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절차에 따라 연 ○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결과(측정시간, 사진)를 기록 · 보존한다.
- (2)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사태 대응 훈련 후에는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시 개정·보완한다. 그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게 보고하다
- (3) 비상훈련실시보고서에는 훈련일, 참자가, 측정자, 목표시간, 측정시간, 상황별 업무,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2.2 수급업체 주관 비상훈련

- (1) 관리부서장은 수급업체에서 실시하는 정기적 훈련에 수급업체의 지침에 따라 현장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2) 수급업체, 소방서 합동 화재훈련은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 (3) 관리부서장은 비상훈련 실시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4)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은 비상사태의 종류와 대처하는데 필요한 조직의 범위에 따라 유사한 등급 및 종류별로 구분하고, 대비·대응한다.

4.2.3 자체 산재 대응훈련

- (1) 관리부서장은 심장발작, 뇌졸중 등 질병에 대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반기 1회 자체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 (2) 현장관리감독자는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 별표 1〉 사고보고서

〈 별표 2〉 비상훈련실시보고서

〈 별표 3〉 비상사태별 시나리오(끼임사고)

〈 별표 4〉 비상사태별 시나리오(화재사고)

〈 별표 5〉 비상사태별 시나리오(감전사고)

✔ 〈별표 1〉 사고보고서

사고 보고서

견	작성	승인
결 재		

발생일자(시간)	조사일시	
발생장소	목격자	
사고개요 및 원인		
개선대책		
조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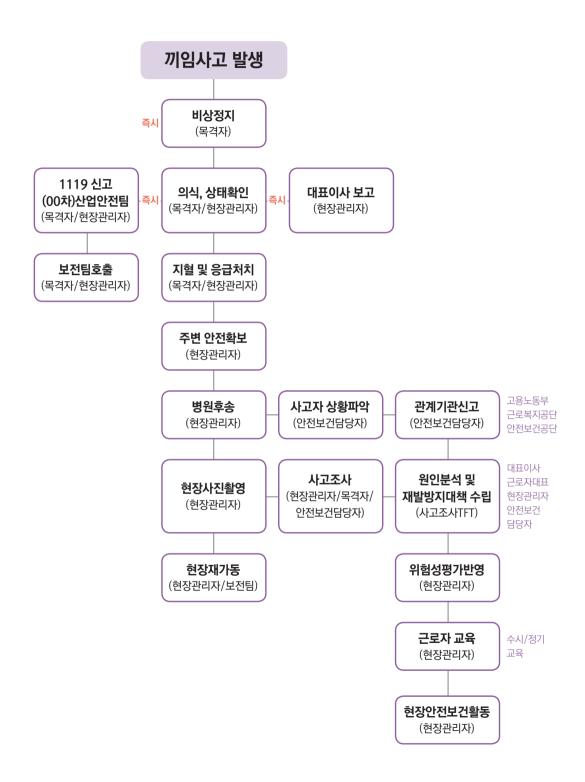
✔ 〈별표 2〉 비상훈련실시보고서

비상훈련 실시 보고서

	작성	승인
결 재		
**11	/	/

훈	련명	훈련일시	
훈련	!장소		
훈련	!내용		
훈련	[결과		
목표시간	측정시간	실제 행동 관찰	비고

✔ 〈별표 3〉 비상사태별 시나리오(끼임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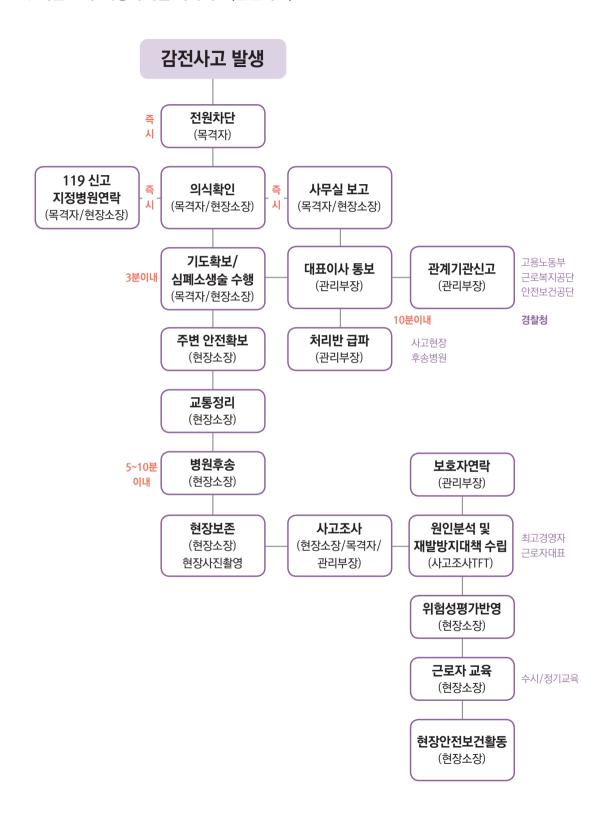
✔ 〈별표 4〉 비상사태별 시나리오(화재사고)

비상대응 시나리오 (화재)

	담당	검토	승인
결 재			
	/		/

비상 사태명	현장사무실 화재발생							
발생장소	00팀 00설비 현장사무실							
발생내용	사무실 내 난방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 외벽 샌드위치 판넬에 화염이 옮겨붙음.							
예상되는 피해 (안전보건영향)	샌드위치 판넬의 스티로폴 재질로 인한 화재확대(호흡기, 화상피해 등)							
목표시간	행동 요령	비고						
1분	최초발견자 : 비상경보발령(화재발신기) → 화재신고 (사내 7119번) → 사무실 보고(사내 5612번)							
2분	분말소화기 이용 화재진압 및 작업자 대피	00공장 앞						
2분	자체소방대 출동 → 소화작업 및 구호활동							
2분	환자발생시 응급처치 후 병원후송							
10분	화재 완전진압 확인후 화재 사후수습 및 라인가동 준비	산소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必						
2분	대피자 현장 복귀							

✔ 〈별표 5〉 비상사태별 시나리오(감전사고)



✓ 성과 평과 운영절차

1. 목 적

이 절은 안전보건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관리함으로서 안전보건 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절은 본사 및 00사업소에 적용한다.

3. 책임 및 권한

3.1 대표이사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의 확인한다.

3.2 관리부서장

각 부서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3.3 각 부서장/현장소장: 부서의 안전보건 성과의 모니터링, 측정 및 기록 유지, 시정조치 등을 주관한다.
 - (1)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대비 성과를 측정하고 기록 유지
 - (2) 성과 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실행 및 조치결과를 관리부서장에게 통보
 - (3) 안전/보건 계측기기를 파악하여 주기적인 검, 교정 실시 및 이력관리대장 관리

4. 업무 절차

4.1 성과측정 절차

- (1) 각 부서장은 7월 초, 12월 중순에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한다.
- (2) 각 부서장은 성과측정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조치한다. 소요예산은 관리부사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연차계획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한다.
- (3)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의 시정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은 차기 내부심사 시 유효성을 검증토록 심사내용에 포함한다.

4.2 준수평가

-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 (2) 관리부서장은 안전보건관련 법규와 고객사의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4.3 안전보건 계측장비 관리

- (1) 관리부서장은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계측기기의 수요를 파악하고 충분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양의 계측 기기를 구입하여 필요한 부서에 보급한다.
- (2) 관리부서장은 검교정장비를 입수한 경우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안전보건계측기기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검교정주기를 파악. 확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또는 외부 검교정을 실시한다.
- (3) 관리부서장은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주기에 검□교정하고 기기목록을 기록관리한다.
- (4) 검교정결과 불합격된 계측기로 측정한 장비는 유효성을 재검증하여 안전보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5) 불합격한 계측기는 수리, 교정하고 그 기록을 이력관리하되 성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고 대체 계측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6) 계측기기 관리 담당자는 계측기기를 정해진 자체점검 주기에 점검하고 이상시 유지보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4.4 일반 사항

(1) 회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과 활동의 주요 특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유지한다.

- ① 안전보건방침에 따른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고 있는가를 측정
- ②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안전보건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이행여부 확인
- ③ 안전보건경영에 필요한 절차서와 안전보건활동 일치성여부의 확인
- ④ 적용법규 및 준수여부 평가
- ⑤ 사고, 아차사고, 업무상재해 발생시 발생원인과 안전보건활동 성과의 관계
- (2)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 매뉴얼, 관련 규정,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등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부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 (3) 관리부서장은 공사용 장비 및 안전장구 등의 자체검사 일정준수 및 검사항목에 대한 적정성 유무 및 불안전요인 제거활동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 (4) 모니터링 및 측정은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위험요인 발견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다.
- (5) 모니터링 및 측정 데이터와 결과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분석에 충분할 만큼 기록되고, 필요 부서에 전달되어야 된다.
- (6) 중요한 안전보건 위험성과 관련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는 수립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위, 형식 및 정도가 적당한다.
- (7) 정확, 정밀도를 보증하기 위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는 정해진 주기마다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관리 및 유지한다.

4.5 성과측정, 모니터링 대상 및 주기

(1) 성과측정, 모니터링의 대상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차례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대상	주기	관련 부서
1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달성의 정도	연2회	전부서
2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	연2회	안전보건관리부서
3	사건(아차사고) 발굴, 조치 및 개선계획 실행 여부	연2회	전부서
4	안전보건 시설 관리 상태	연2회	전부서
5	설비/장비 일상, 예방 점검	연2회	전부서
6	안전보건교육	연2회	전부서

- (2)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 ①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을 하는 부서는 이를 규정된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부서는 상기 항목 중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달성 정도, 사건 발굴 및 조치, 유해요인 개선계획의 실행 결과를 주기별로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③ 내부 심사원은 내부 심사 시 각 부서의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활동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④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활동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은 4.5.2(부적합시정 및 예방조치)에 따라 시정한다.
 - ⑤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의 결과는 안전보건 경영 검토에 반영한다.
- (3)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의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 ① 관리부서장은 내부심사 시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목표달성도가 불충분한 경우 해당부서에 4.5.2(부적합시정 및 예방조치)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 ②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부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한 후, 시정조치 결과를 안전보건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③ 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 (4) 안전보건 법규 및 절차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음에 따른다.
 - ① 안전담당자는 규정된 주기마다 관련 법규 및 절차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 ②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붙임 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붙임 2〉 부적합보고서

〈붙임 3〉 검사장비대장

〈붙임 4〉 검사장비이력카드

✔ 〈붙임 1〉 목표 및 추진계획서/성과측정 및 모니터링결과서

목표

추진계획

실적

전사목표

(201)년도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일정

담당자

작성일 20 **소요예산**

(천원)

비고

(참고서류)

산업 재해 Zero	2〉목표 및 추	진계획서/성고	·측정 및 !	모니터	링결과	Д				
			부 적 합							
		 조치구분 : □ [!]] 예방조치				
부서/팀	명				- 7	보고일자	2	0 .		
관련문서	4									
■부적협	합사항									
						작성	성	경	(인)	
						확인	성	경	(인)	
■ 시정(시	정조치/예방조치)	내용								
원 인:										
조 치:										
첨 부:										
		최종처리이	행확인:	□적	합	□ 부적합				
	검토 : 성명	(인)			2	승인 : 성명		(인)	

✔ 〈붙임 3〉 검사장비대장

번호	관리번호	장비명	규 격	교정대상	교정주기	교정일	차 기 교정일	비고
							T.05	

✔ 〈붙임 4〉 검사장비이력카드

	7	장 남	101	력키	드			분 류 (설비관	번 호 ·리번호	<u>E</u>)					
	품 명					원명 :					작 성:	년	월	4 (일
	품 명					한글:					작성자 :			Ç	인
	모 델 명														
	제 작회사 (Serial No)			()									
	제작국명														
	구입일자				년 월	일									
	제작년도				년 월	일					(사진	1)			
	가 격										(시간	!)			
	내용년수														
	구 입 처				(TEL:)									
사용환경조건 및 사용제한사항															
	교정주기														
	교정일자		/	/	/	/	/	/	/	/	/	/	/		/
	연번			품 명		EA	소모 여부								
	1							규	격						
	2														
부대품															
	4							-							
	5							용	도						
	7							-							
	7	-		* 1 *											
			4	현	5		점검주	크기:		분류 번 (설비관리					
연번	일자 점검사항		나항			3	치결	과		점 검 (점검기		확	인		

참고 5: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시행 2022. 1. 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 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 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산업 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 상 발생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 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1. 역화비닐 · 유기주석 · 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 · 일산 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 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 · 크실렌(xylene) · 스티렌(styrene) · 시클로 헥산(cyclohexane) · 노말헥산(n-hexane) ·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 3. "중대시민재해" 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 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 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은 제외한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 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생명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급성중독
-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 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10. 불화수소 · 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 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 11.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 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 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 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 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brucellosis)
-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 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 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변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 · 대합실 · 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 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 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 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
- 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 터 이상인 것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 한다.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 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 피스텔은 제외한다.
- 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 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 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 1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비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 의 오피스텔인 건축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년 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령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 제(波除堤) 및 호 안(護岸)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 의 호안
나. 계류시설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 집회 시설, 종교시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 (護岸)을 포함한다]		
다.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 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깎기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 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 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 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 인 절토사면		

※비고

- 1. "도로"란「도로법」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 2. 교량의 "최대 경간장" 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 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 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 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 다.
-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 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항만법」제2조제5호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 7. "계류시설"이란「항만법」제2조제5호가목4)의계류시설을 말 하다
- 8. "댐"이란「저수지·댐의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제 2조제1호의 저수지·댐을 말한다.
-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 가목의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 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 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 13.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 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 15. "철도 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 치한 것으로 한다.
- 17. "포용조수량" 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 (湖水)의 양을 말한다.
- 18. "방조제" 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37조, 「농 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 조제를 말한다.
- 19. 하천의 "통관" 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 20. 하천의 "다기능 보" 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 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 · 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 · 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 되는 도시철도차량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 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 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 6. "제조물" 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제2호의 시설 물은 제외한다)
 -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 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 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 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 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 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제2조제3호의 주유소
-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 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 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 정할 것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 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 · 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 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 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 관리할 것

-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 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 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 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 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 이라 한다)에 안 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 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 2. 교육일정
 -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 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⑥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 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 주어야 한다.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 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 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 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 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감경기준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사업·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 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 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 경할 수 있다.

제3장 중대시민재해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cdot 예산 \cdot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개별기준

		과태료		
위반행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2항	1천 만원	3천 만원	5천 만원

제3장 중대시민재해

-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 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 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유해 · 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다. 그 밖에 원료 · 제조물 관련 안전 · 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 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 · 유지
 - 나. 유해 · 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유해 · 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 · 위험요인 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 고 및 조치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
-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포장
- 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 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 · 의약외품
-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
-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3항의 화약류
-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 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 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10조(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 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 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관리 업무의 수행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 집행할 것
 - 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 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 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되도록 할 것
 -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 교통수단의 점검 · 정비(점검 ·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 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 · 보강 등 유지관리 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 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 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 법 .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 · 위험요인의 확 인 · 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 · 위험요인을 발견 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 · 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 · 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 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 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 · 관리 업 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 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 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 한 평가기준 ·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 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 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장 보칙

-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 상 점검(해당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 · 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3.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 · 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 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 등
 -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 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제4장 보칙

-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 장소
 -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 · 위험 시설의 개선 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 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21, 1, 26.] 제16조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제3항 및 제 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 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잡이 매뉴얼